



# 국제표준화 뉴스

## 1. 국제표준화 주요 활동

### 1) APEC(아·태경제협력업체)에서 활발한 표준화 활동 전개

- 1993.11월 정상회의 설치이후 그 위상 및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있는 APEC 산하 CTI(무역 및 투자위원회) 제1차회의가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APEC 17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94. 1. 31~2. 1간 개최되었다. 동회의는 CTI 초대 의장국에 아국이 피선됨에 따라 향후 역내 무역자유화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시점에서 개최된 첫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특히 CTI는 '94년 작업프로그램으로 통관절차, 관세율, 데이터베이스 등 10개를 선정하였는데 그중에 표준 및 부합성(Standard & Conformance)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이번 회의 의제중 표준 및 부합성분야는 향후 APEC 17개국간 교역자유화를 위한 기술장벽 제거라는 취지하에서 별도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공업진흥청에서는 일반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보건의약품 등 국내 각부문의 국제표준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번 CTI회의에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APEC 역내에서 이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우리측은 역내 표준 및 부합성분야의 조화작업의 중요성 및 아국의 적극 참여입장 표명, 국가간 기술수준·제도 등의 차이로 인한 장기적인 접근의 필요성, 기타 국제 및 지역표준화 활동과의 조화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 이번 회의(표준 및 부합성분야)에서 APEC 역내국가간 표준 및 부합성분야의 작업들 및 분야별(국제규격과의 부합화,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방안, 인증·검사제도의 상호인정 활성화) 업무지침을 2차 CTI회의('94. 5월 예정)까지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역내 기술장벽제거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역내 각국가의 인증제도, 기술규정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
- 향후 CTI회의는 '94년 5월, 9월, 11월에 계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본회의에서 도출되는 APEC 역내의 표준활동결과는 본 뉴스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게재코자 한다.

2)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

정보기술분야의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ISO/IEC의 공동기술위원회인 JTC1 총회가 '94. 1. 31~2. 4일간 18개국 59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JTC1 산하 분과위원회(SC) 의장들이 참석한 포럼이 각 분과위원회 및 작업집단의 위원장과 각국 대표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JTC1 총회는 특히 차기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94. 10월)임에 따라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동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회의(총회)에서는 국제규격작성에의 정회원국의 충실한 의무준수 촉구, JTC1 산하 분과

위원회 및 특별작업반 위원장 임명, ISO(국제표준화기구), CEN/CENELEC(유럽표준화기구)와의 협력강화방안, 신규 분과위원회(SC 30)설립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이번 회의기간에는 '94. 10월에 열리는 JTC1 서울총회 개최와 관련한 회의일정 및 회의시설 등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완료하였다.

정보통신분야는 타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첨단분야로서 국제적인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이고, 각국의 이에 대한 관심도 지대한 만큼, 지난해 3회의 이분야에 대한 국제회의의 서울유치에 이어 금년에도 총회를 포함 3회를 유치코자 하며, 국내 관련업계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2. 국제품질보증시스템(ISO 9000시리즈) 소식

○ 개정된 ISO 9001의 주요 개정내용

항 목	현 행	개 정
4.1 경영층의 책임	○ 공급자측(supplier)의 <u>경영층</u> 은 품질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	○ 공급자측(supplier)의 <u>품질담당경영층</u> 은 .....
	☞ 해설: 막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경영층을 품질담당경영층으로 제한함으로써 품질메뉴얼의 승인, 품질방침의 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임원 또는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함.	○ (삭 제)
	○ 설계검토, 내부품질감사는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종업원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	
	☞ 해설: 중소기업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였음. 설계검토(design review)의 경우 설계에 직접 참여한 종업원도 설계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규격해석이 명쾌하게 되어 있으나 내부품질감사의 경우는 규격해석시에 약간의 분쟁의 소지를 남기고 있음. 즉 "4.17항 내부품질감사"에서는 ISO 10011(감시지침)을 참고토록 하였음.	
	* 4. 17항 해설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임.	

항 목	현 행	개 정
<p>42 품질시스템</p>	<p>○ 품질시스템을 수립 .....</p> <p>☞ 해설: 추가된 품질계획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현행 규격내용 중 참고사항 (note)으로 처리된 내용을 요건사항(requirements)으로 격상한 것임.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만 작성되는 품질계획서(quality plan)와 금번 추가되는 품질계획(quality planning)은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임.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 계획(quality planning) : 일반적 상황에 적용</li> <li>- 품질계획서(quality plan) : 특수한 상황에 적용</li> </ul>	<p>○ (좌 동)</p> <p>○ 품질계획(quality planning)을 수립...</p>
<p>43 계약 검토</p>	<p>○ 계약검토에 관한 규정을 작성 .....</p> <p>☞ 해설: 현행규격의 취지는 공식계약(formal contract)에 한하여 동항목(4.3)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국내업체에서는 공식적 계약 체결없이 주문서등에 의하여 제품이 출하되므로 동 항목에서는 사실상 면탈되었음(공식계약행위없이 동항목을 적용한 기 ISO 9000인 증 업체의 경우는 “과잉 system의 희생자”로 볼 수도 있음).</p> <p>국내의를 막론하고 공식계약이 아닌 주문서, 전화주문의 경우에도 동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금번 개정규격으로 주문(order)도 계약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없도록 하였음.</p>	<p>○ (좌 동)</p> <p>○ 주문(order/statement of requirement)도 계약범주에 포함.....</p> <p>○ 계약의 수정(anendment to contract)에 대하여는 .....</p>

### 3. ISO/IEC 동정

#### 1) IEC에서의 인증활동

1906년 창설이후, IEC는 전기관련 국제기술규격 제정을 통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기여해 왔는 바, 이러한 IEC 규격은 특히 안전성기기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선택과 기기사용에 관한 기반 제공은 물론, 전기제품 및 장비의 국제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한편, 1990년대에 IEC는 IEC 규격의 세계적인 조화와 기기의 인증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있다. IEC의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가 "CB Scheme"으로서 이는 안전성에 관한 국가규격을 기초로 시험하고 그 결과가 해당 규격에 적합하다고 증명된 전기제품에 인증을 해 주는 제도로서 이제도에 의하면 회원기관에 의해 발행된 시험인증서를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도는 주로 IEC 규격을 채택하는 국가인증기관에만 개방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소관분야는 전기기기, 정보기술장비, 의료기 등 전기제품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장비의 인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이 작년에 회원국에 가입함으로써 CB인증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CB 인증서발급은 650건에서 2,260건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 인증서를 획득한 제조업자에 의한 인증서 활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인증서는 현재 2~3건의 국가인증을 획득하는데에만 사용되고 있다. EC국가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있어서의 시험인증서의 활용은 매우 높다.

이러한 제반상황을 살펴 볼 때 CB Scheme이 세계 무역자유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다 완전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규제기관의 승인을 목표로 승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인증서의 수용가능성이 CD Scheme의 향후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유럽에서는 EC 지침서와 관련하여, CB Scheme 참여 시험기관들의 현황에 관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여러 국가의 관련 규제 기관들도 CB 시험성적서의 인정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IEC는 전자부품에 대한 세계적인 인증제도 IECQ Scheme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전자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회원국간의 차별없이 제조업자, 유통업자, 시험기관들에 대하여 IECQ승인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20개국이 이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제도에 의하면 규정된 IECQ시방서와 적합한 변압기, 컨덕터, 광섬유부속품, 인쇄판, 저항기 등 광범위한 전자부품들에 대하여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유사한 CECC(유럽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와 병행해서 운영되며, 양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품질 평가된 전자부품에 대하여 세계적인 단일체제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현재 IECQ에서는 폭발물 보호장비, 전선 및 코오드, 전자기 적합성 등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제품 인증제도도 개발되었다. 특히 폭발물 보호장비에 관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의 초안은 현재 작업반에서 검토중에 있다. 폭발물 보호장비의 경우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다양한 국제규격이 많지만, 시행중인 국제인증제도는 없고, 업체는 상이한 규격으로 인한 다양한 승인요건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이 분야의 장비규격을 세계적으로 조화시키고, 참가국간에 수용될 수 있는 IEC에 기초한 단일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분야의 규격을

제정하는 IEC TC 31의 업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EMC(전자기 적합성)관련 자기인증을 위한 CB Scheme안이 개발되고 있는데, EMC에 관한 유럽의 지침서와 함께 이 제도의 기초가 되는 EMC 관련규격이 부상되지만, 현행 CB Scheme에서 사용되는 것과 상이한 제품그룹의 인증에 대한 심도있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적합성에 대한 시험과제시에 있어서 다른 철학을 필요로 할 수 있다.

## 2) 각국의 상호인정제도에 관한 자료입수

ISO/CASCO(적합성평가위원회)는 '93년 "적합성평가인정"관련 ISO workshop에서 발표된 각국 대표들의 논문을 수록한 논문집 "Conformity assessment recognition"을 최근 발행하였다. 이 논문집은 적합성평가기관의 세계적 인정의 필요성, 시험기관과 품질시스템 등록 및 제품인증간의 상관관계, ISO 9000 국제인정제도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 시험인증기관간의 약정, IEC의 사례, 유럽의 시험인증업무 진전사항, 네델란드 인증협회의 국가적 사례연구, 인정기관간 협력, 품질시스템등록기관의 상호평가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현재 국제표준과에서 1부를 비치하고 있어 열람이 가능하고,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국내 ISO/IEC 간행물 판매대행기관인 한국표준협회 해외규격과(Tel. 3698-257/8)를 통하여 ISO에 주문할 수 있다. 가격은 CHF. 29.-이다.

## 3) 청정실 및 관련 제어환경(ISO/TC 209) 분야의 국제표준화

환경관련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어 발맞추어 '93년도에 신설된 청정실 및 관련 제어

환경(Cleanrooms and associated controlled environments) 분야에 관한 ISO/TC 209회의가 최근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다. 미, 영, 불, 독, 이태리, 스위스 등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TC 209의 향후 정책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작업반도 신설되었다.

TC 209의 담당작업을 살펴보면 청정실 및 관련 제어환경내의 장비 및 설비, 운영방법에 관한 표준화를 다루고,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상의 제한 사항과 시험절차를 규정하는 업무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우선적인 업무로써 생육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분자, 표면의 청결도, 실온 및 습도, 공기흐름의 유형 및 속도, 실내의 진동을, 광도, 실내의 침투누출량, 작업자의 작업절차 및 의복, 장비 준비, 기타 청정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등을 들 수 있다.

TC 209에서는 또한 ISO/TC 146(대기의 질)과 CEN(유럽표준화기구)/TC 243(오염제어기술)과의 협력활동 등 유관기술위원회와의 협력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기타 미 연방규격 209E와 일본공업규격 및 기타 다른 나라의 표준화 활동이 규격제정의 가속화에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TC 209의 배경 및 추세, 목표, 우선순위, 작업프로그램, 운영, 자원 및 TC의 작업 목표일을 포함한 전략적 정책(Strategic Policy Statement)의 윤곽이 만들어져서, 간사기관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어 회원국들의 의견을 위하여 머지않아 회원국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ISO/TC 209 제2차 회의는 '94. 10. 9~10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청정기술에 관한 국제회의와 더불어 개최될 예정이다.

## 4) 정보교환에 관한 개방시스템(OSI)

## 시험성적서 인정 소식

작년말 브뤼셀에서 개최된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시험성적서의 국제적인정"에 관한 workshop의 결과로, 정보기술상품의 국제단일 시장 형성에 대한 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다. 18개국의 13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workshop은 ISO/IEC와 CEC(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공동체위원회)의 후원으로 ECITC(European Committee for IT & T Testing & Certification: 유럽정보기술 및 통신시험인정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이번 workshop에서는 시험기관의 인정 및 운영, 제품시험 인증업무의 상호운영 가능성, 공급자에 의한 적합성 선언, 정부의 조달정책등과 관련한 광범위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는데 구체적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기술의 국제적인 촉진을 위하여 국제규격의 중요성의 제시, 국제적 인정의 첫단계로써, 특히 시험기관의 상호인정에 있어서 유럽과 북미에서 이미 진행중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니셔티브, 창출, 다른 지역과 CEEC와의 협력등이 논의되었다.

기타 참석자들은 OSI 상품을 Internet에 의거한 상품과 소유권 문제등과 같은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사용자들이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한 반면, 공급자 자체의 적합성 선언과 공식적인 제3자 인증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를 보였으며, 시험업무의 상호 운영가능성 및 적합성 시험을 보완하는 역할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회의의 결과로 workshop 프로그램위원회는 국제규격에 의거하여 상호 연관있는 상품은 한번에 시험인증하여, 세계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가속화에 목표를 두고, 작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 4. NAFTA 기술장벽 협정문 해설

1994년 1월 1일부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역외국에는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향후 역내 표준 및 인증제도의 통일화 작업이 가속될 전망이다에 따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NAFTA협정문중 기술장벽 협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가. 적용범위

체약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표준 관련조치 및 그러한 조치와 관련이 있는 각 체약국들의 조치에 대해 적용되며 위생 및 식물위생기준 관련조치 및 정부기관의 구매명세서는 본협정내 기타 장의 적용을 받는다.

### 나. 체약국의 권리 및 의무

- 자국내 지방 또는 주정부 및 민간표준 관련 단체로 하여금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각 체약국은 인류, 동식물, 공공위생, 환경, 소비자의 보호 및 안전에 관한 표준 관련조치를 채택, 유지, 적용할 수 있으며, 동 목적하에 자국의 정당한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보호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 타 체약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조치가 되는 것
  - 체약국간의 교역을 제한하는 위장된 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

-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수준의 위험과 효용을 제공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간에 차별하는 행위
- 타 체약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무차별 대우)를 해줄 의무를 지고 있다.
- 체약국들은 타체약국과의 교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를 야기시키기 위한 표준관련조치를 준비,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할 수 없다. 단, 그러한 조치의 목적이 정당한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한 보호기준을 충족시키는 타 체약국 상품의 수입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이다.
- 각 체약국은 기존의 또는 완성이 임박한 국제표준이 있을 경우 이를 자국의 표준관련 조치로 사용해야 한다. 단 기후, 지형, 기후, 사회간접시설, 과학적 요인이나 적정수준의 보호기준 등의 이유로 자국의 정당한 정책 목표달성에 부적합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다. 표준 및 부합성평가의 조화

- 각 체약국들은 체약국간의 표준 관련조치 및 부합성평가 절차를 상호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특히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영토에서 시행되는 표준의 부합성평가절차가 자국에서 채택·유지되고 있는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부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실하게 판별해 주는 것이란 점만 확인되면 동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결과를 자국의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결과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택해야 한다.

#### 라. 부합성평가절차 관련

- 각 체약국은 필요이상으로 엄격한 부합성평가절차를 채택·유지 및 적용해서는 안된다.
- 절차의 개시와 종료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처리기한은 보편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시 예상처리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 평가기관은 신청서접수시 최대한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통보함으로써 신청인이 필요한 교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 통보·발표 및 자료제출의 의무

- 새로운 기술규정의 채택 또는 개정시 그러한 기술규정의 채택 또는 개정일로부터 최소한 60일전에 적용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명, 목적 및 이유 등에 대한 소개를 포함해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부패성 상품의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타 체약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시 자료제공을 해야하며, 관련 국제표준과 차이가 있는 조항은 이를 밝혀 두어야 한다.
- 단 인류, 동식물, 공공위생, 환경, 소비자의 보호 또는 안전에 관련되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각 체약국은 위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다.
- 각 체약국은 연방차원에서 위의 통보의무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을 지정하여 타 체약국에 통보해야 하며, 특히 2개이상의 정부기관을 지정한 경우 각 기관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바. 질 의 처**

- 각 체약국은 타체약국 및 타체약국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문의에 답변할 수 있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의처(질의처)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사항에 관한 적합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연방, 지방 또는 주정부차원에서 계획, 채택 또는 유지되고 있는 표준관련 조치
  - 각 체약국 또는 각 체약국의 관련 연방, 지방, 주정부기관이 구성원 또는 참가자인 국제적 및 지역적 표준기관과 부합성 평가제도 및 표준관련조치에 관한 양자간·다자간 협정
- 통보문이 발표되는 장소 또는 그러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장소
- 질의처의 설치 장소
- 각 체약국의 부합성평가절차, 체약국의 정책목표 추구시 고려되는 요소 및 보호기준

**사. 표준관리위원회**

- 본 협정의 당사국은 각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표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 동 위원회는 산하에 실무그룹 및 소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등을 권장한다.
  - 각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들간의 조화성을 유지시키는 제도의 개발 촉진
  - 표준관련 조치의 개발, 적용 및 시행에 관한 협력증진
  - 표준관련 조치에 관한 민간, 지역간 및 다자간 협의방안 개발
-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시 동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도 또는 주정부 대표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GATT TBT협정과 대비**

- NAFTA에 나타나 있는 표준관련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GATT TBT협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TBT 협정보다는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각국의 표준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큰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체약국들로 하여금 국제표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외국에게 불필요한 교역장벽 야기 가능성을 띠고 있다.
- 강제규범분야에 대한 예외 허용범위도 소비자보호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기타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표준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표준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재량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술장벽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AFTA 협정문은 국제표준과의 조화노력규정, 질의처 설치규정 등에 있어서 대부분 GATT/TBT 협정문과 그 내용을 같이하거나 구체적인 조항들에는 독자적인 재량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기술장벽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5. EU의 표준화·인증제도 개요**

'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서명된 이래 기존의 EC(구주공동체)에 대한 호칭이 EU(구주연합)으로 변경되었으나 대외적 법률관계 형성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EC를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여기에서는 편의상 EC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동안 EC는 인간·자본·재화의 자유이동이라는 전제하에 각종의 교역상 장벽을 제거하는 노



력을 기울여 왔으나 회원국간 상이한 표준 및 인증절차로 인한 기술적 장벽이 완전한 통합에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합 EC의 이러한 기술장벽제거 노력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표준화·인증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EC의 새로운 표준화제도는 “기술조화 및 표준화에 관한 신접근법(New Approach)”의 채택을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접근법에 의한 유럽표준제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통합 EC의 표준은 양대 민간표준화기구(CEN/CENELEC)에서 제정하되 중요사항(건강, 안전,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EC 각료이사회가 지침으로 필수요건을 제정하고 이를 표준개정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상이한 기존의 국별 표준은 폐기시켜야 함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유럽민간표준화기구 현황

	C E N (유럽표준화위원회)	CENELEC (유럽전기기술 표준화위원회)
설립년도	1960	1972
담당분야	비전기 분야	전기분야
회 원	EC 12개국의 표준기구  EFTA 6개국의 표준기구	EC 12개국의 표준기구  EFTA 6개국의 표준기구

다음으로 EC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단일 EC인증마크인 CE마크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최근 세

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표준화와 관련한 EC의 환경마크 부여제도의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럽각국은 기존에 국가별로 규격 및 기술규정을 설정하고 자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이를 충족시키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별 인증제도를 실시해 왔으나 인증제도의 통일 관한 총괄적 접근(Global Approach) 방식의 채택으로 인증제도의 역내 통일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EC인증제의 특이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소비자의 건강, 안전이나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품은 특정부합성절차를 거쳐 단일 EC인증마크(CE마크)를 획득 해야만 역내유통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이러한 CE마크는 일단 획득하게 되면 EC개별 회원국내의 부수적인 승인절차 없이 EC내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CE마크 부착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으로는 개별국의 인증마크도 일정기간(과도기간) 허용되나 그 기간이 지나면 CE마크의 부착이 의무시 되며, 또 CE마크의 부착의 책임은 그 실질적 수행과 관계없이 제조업자 또는 역내 대리인이 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CE마크 부착을 위한 방법 및 절차는 8개의 방식(module)이 있는데 품목별로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며 관련지침에 따라 2개이상의 방식이 지정되게 되므로 이중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8개방식중 3개방식은 ISO 9000시리즈가 반영된 절차임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참 고〉 CE마크 적용품목

품 목	대 상 품 목
완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세 미만용 완구</li> <li>• 단 X-Mas트리, 불꽃놀이, 놀이터시설, 스포츠용품 등은 제외</li> </ul>
단 순 압 력 용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압력 0.5bar 이상의 용접 용기</li> <li>• 단 원자력, 배, 비행기용은 제외</li> </ul>
가 스 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를 이용한 조리기구, 히터 온수기, 버너, 냉장고, 조명 및 세척기 등</li> <li>• 온수 보일러는 구모델에 적용</li> </ul>
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톱, 평삭반, 프레스, 선박등 일반 공작기계류와 목공기계 등</li> </ul>
엘 리 베 이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식 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li> </ul>
개 인 보 호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건강에의 위협으로부터의 개인용 보호장비</li> <li>• 단, 다른지침으로 규정되는 동일용도의 장비는 제외</li> </ul>
비 자 동 저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 의료, 통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반 계량저울</li> </ul>
전 자 기 정 합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기 등을 발생시켜 무전기 등 통신장비의 전파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li> </ul>
의 료 장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장근육 등 신체에 이식되는 전자의료 장치</li> </ul>
건 축 자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멘트, 타일, 목재, 문, 위생도기 등</li> </ul>
전 자 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격전압하의 산업 및 가전제품</li> </ul>
건 설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삭기, 도저, 로더 등</li> </ul>
계 량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력 계</li> </ul>
측 정 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기기</li> </ul>
방 폭 전 기 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폭등</li> </ul>
통 신 단 말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기, 팩시밀리 등</li> </ul>
온 수 보 일 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 또는 가스연료를 이용한 새로운 온수보일러</li> </ul>

위 품목중 건설장비(1994. 1. 1부터 시행)외에는 기시행 품목임

다음은 최근 급속히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반영한 EC공동체의 환경마크 부여제에 대해 그 목적 및 일반원칙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환경마크부여제도는 제품이나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제품이 용도에 부응하는 성질에 현저한 영향을 줌이 없이, 전체 life cycle중 환경영향이 절감된 제품의 설계, 제도, 시판 및 사용을 촉진하며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영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 주류 및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마크에 관한 일반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목적에 부합되고 공동체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부합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둘째, 환경마크는 EC지침서 67/548/EEC와 81/

379/EEC에 의거 위험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나 제품, 인체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치는 공정으로 제조되는 제품에는 부착될 수 없다.

셋째,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환경마크의 부여를 요구하는 제품은 역내에서 제조된 제품과 동등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조건이 발효되면 각회원국은 환경마크 부여를 위한 심사를 담당할 책임자를 임명하게 되며, 공동체내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의 제조국 또는 최초시판국 또는 수입국이 임명한 책임자에게 환경마크 부착을 위한 출원을 하게 되며 이러한 출원이 있으면 책임자는 사정을 한 후 마크부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U의 표준·인증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업진흥청에서 기 번역·배포한 "EC 통합에 따른 새로운 표준화·인증제도 관련 자료"해설 책자가 있음)

### 전기용품 표시에 관한 규정 안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1종 및 2종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공업진흥청고시 제92-254호, 개정 '92. 6. 4)에 의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용품 사후관리결과 일부 전기용품의 표시사항이 동 규정에 부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표시위반사례 :
- 제조년월일 미표시
  - 옥내외용 구분 미표시
  - 정격소비전력 미표시
  - 한글 미표기
  - 상 미표시
  - 접지 미표시 등
- (정격전압110V초과제품)